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51

제안연월일 : 2016년 12월 19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안 제4조의 '관광지원기본계획'을 별도 수립·시행하기보다는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'관광진흥종합계획'에 포함하고, 안 제5조에서 장애인 관광지원사업과 지원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을 구체화하여 신설하며, 안 제8조(보험가입 등)의 경우, 관광활동의 범위와 보험수혜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삭제하는 등 몇 개의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○ 안 제4조제2항 중 "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과 맞아야 한다"를 "제1항의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"로 수정함(안 제4조제2항).

○ 안 제5조(장애인의 관광활동지원)를 ① 시장은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"로 수정함(안 제5조).

○ 안 제8조를 삭제하여 안 제9조는 제8조로, 안 제10조는 제9조로 함(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과 맞아야 한다”를 “제1항의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”로 하며,

안 제5조를

“제5조(장애인의 관광활동지원) ① 시장은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”로 하며,

안 제8조를 삭제하여

안 제9조는 제8조로, 안 제10조는 제9조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관광지원기본계획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과 맞아야 한다.	제4조(관광지원기본계획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제5조(장애인 관광활동지원) 시장은 법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	제5조(장애인 관광활동지원) ① 시장은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제8조(보험가입 등) ①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·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〈삭제〉
제9조(표창) (생략)	제8조(표창) (제정안과 같음)
제10조(시행규칙) (생략)	제9조(시행규칙) (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, 관광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관광취약계층"이란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,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광지원기본계획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한다.

1.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
2.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3.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지원에 따른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
4.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
5.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5조(장애인 관광활동지원) ① 시장은 「관광진흥법」 제47조의3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민간참여의 촉진)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예산편성)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·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표창)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표창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